|  |  |  |
| --- | --- | --- |
|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제512호)제44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 유관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화장품제조 또는 판매 및 의약 제조와 음료 제조(주류 제조 불포함)기업이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용지출에 대해 당해 연도 판매(영업)수입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를 허가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2.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분담협의(이하 ‘분담협의’)를 체결한 관련 기업에 대해, 그 중 일방이 발생한 당해연도 판매(영업)수입의 세전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비율내의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은 본 기업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담협의에 따라 다른 일방에 귀속하여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른 일방이 본 기업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본 기업의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3. 담배기업의 담배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은 일률적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 시,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4. 본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5월27일 |  | **关于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  **扣除政策的通知**  财税〔2017〕4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512号）第四十四条规定，现就有关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政策通知如下：  　　一、对化妆品制造或销售、医药制造和饮料制造（不含酒类制造）企业发生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不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30%的部分，准予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二、对签订广告费和业务宣传费分摊协议（以下简称分摊协议）的关联企业，其中一方发生的不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税前扣除限额比例内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可以在本企业扣除，也可以将其中的部分或全部按照分摊协议归集至另一方扣除。另一方在计算本企业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企业所得税税前扣除限额时，可将按照上述办法归集至本企业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不计算在内。  　　三、烟草企业的烟草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一律不得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四、本通知自2016年1月1日起至2020年12月31日止执行。  财政部  税务总局  2017年5月27日 |